

『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 -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
 - 학자금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등
- 지원 자격 (안 제4조)
 - 지원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
 -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 최대 6학기까지 지원
- 중복지원 금지(안 제6조)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장학재단, 기업체 등 타 기관에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,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학자금대출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학자금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대학생 전입 유도로 구미시 인구증가 대책으로서의 효과도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- 도내에서는 경상북도 포함 4개 지자체(경상북도, 안동, 영주, 경산)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(또는 시행예정)중인 것으로 파악되며,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중복지원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.